

대학원장학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구열을 고취하고 본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합당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장학단체 또는 교내 외 인사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 장학금 관리와 운영은 대학원이 담당하고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관장한다.

제4조(장학위원회) ① 장학위원회(이하 본 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부재 시에는 학생처장)으로 하고 각학과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본교의 장학에 관한 일체사무는 교무처장이 통괄 취급하고 제반 실무를 집행한다.

③ 위원회는 매 학기 개시전에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자격기준) ① 장학금은 교비 장학금과 대외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비 장학금은 이사장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학비면제 장학금, 근로 장학금, 총학생회장 장학금, 교역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경안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③ 본교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본 규정에 의한다. 단, 대외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단체 및 개인이 특정한 지급 조건에 따를 수 있다.

④ 본교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이사장 장학금 : 본교 재학생으로서 전학기 6학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학업성적(3.7이상)이 우수하며, 품행이方正하여 타의 모범이 되며,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나. 성적우수 장학금 : 본교 재학생으로서 전학기 6학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학업성적(4.0이상)이 우수하며, 품행이方正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다. 학비면제 장학금 :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자.

라. 근로 장학금 : 본교 재학생으로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일정기간 근로하는 자.

마. 원우회장 장학금 : 본교 원우회장으로 선출된 자.

바. 교역자 장학금 : 본교 재학생 중 현직 교역자로서 전학기 6학점 이상 취득한자로서 학업성적(3.3이상)이 우수한자.

사. 부부 장학금 : 본교 재학생으로 부부가 동시에 재학 중일 경우 부부 중 1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아. 경안 장학금 : 본교 재학생으로 학생 지도상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장학금 신청) : 장학금의 지급 신청은 매 학기별로 하되 신청기간은 장학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기간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주임교수를 경유, 위원회에 제출하여 장학심의 대상이 된다.

제7조(장학금 지급액 및 인원) 장학금의 지급액 및 장학생 선정은 매 학기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지급시기) 선발된 장학생은 위원회에서 장학증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내에 행정실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소정 기간내에 미결된 장학금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장학금 신청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신입생 및 복학생.
2. 재입학자.
3. 근로성적 불량평의 평가를 받은 근로 장학 수혜자
4. 기타 위원회에서 신청 자격을 제한 한자.

제10조 (장학금 지급 중지 및 취소) 선발된 장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1. 휴학 및 제적자.
2. 소정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는 자.
3. 장학금 신청서의 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

제11조(지급횟수의 제한) 교비 장학금은 한 학생이 동시에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 및 본 규정의 개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이를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본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시행일)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